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신구조문대비표

2023. 4. 3. 개정 판 (시행 2023. 4. 1.) → 2024. 6. 3. 개정 판 (시행 2024. 6. 1.)

바뀜 6 · 신설 0 · 삭제 2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500/compare?from=1437&to=155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38:4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u>구분</u> <u>사용료 (1일)</u> <u>사용시간</u> <u>(2시간기본)</u> <u>추가사용료</u> <u>시간당)</u> <u>냉난방비</u> <u>(시간당)</u> <u>비고</u> <u>객실</u> <u>30,000</u> <u>≡ 냉난방 포함</u> <u>≡ 동계(12≡ 3월)하계(6≡ 9월)</u> <u>≡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u> <u>동·하계 40,000</u> <u>체육관</u> <u>600,000</u> <u>200,000</u> <u>100,000</u> <u>80,000</u> <u>시설사용규정</u>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현행	개정안
③ 교직원인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u>〈신설 2023-04-03〉</u>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㉔ 냉난방 포함 ㉔ 동계(12㉔ 3월)하계(6㉔ 9월) ㉔ 일반환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신분증 지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u>〈개정 2024-06-03〉</u>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u>〈개정 2024-06-03〉</u>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출입 금지 <u>〈개정 2024-06-03〉</u>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현 행	개 정 안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06-03)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u>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u>	<삭 제>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 구분
사용료 (1일)
사용시간
(2시간기본)
추가사용료
시간당)
냉난방비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 3월), 하계(6≡ 9월)

≡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동·하계 40,000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신분증 지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